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88호

202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상업계고[졸업(예정)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상업계고[졸업(예정)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방법

가. 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직 렬	선발예정인원
교육행정	4

나.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명	직렬	필기시험 과목	비고
9급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상업계고)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 시험시간: 70분(11:30~12:40)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객관식 4지택 1형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며, 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이 2026. 8. 29.인 경우, 2026. 6. 30. 현재가 기준이 됨.

다. 제2차 시험: 서류전형(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격요건 등 서면 심사)

라.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2 시험 일정

추천서 제출기간 (학교→교육청)	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시)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 13.(월) 09:00 ~ 7. 17.(금) 18:00	**7. 27.(월) 09:00 ~ 7. 31.(금) 18:00** [취소마감일시: 8. 3.(월) 18:00]	필기 시험	8. 12.(수)	8. 29.(토)	9. 29.(화)
		면접 시험	11. 20.(금)	12. 5.(토)	12. 22.(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뉴스/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7. 2. 28.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당해 최종(면접)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17세 이상 (2009.12.31. 이전 출생자)

다. 학교(장) 추천

○ 추천 가능 학교

-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선발예정직렬(임용예정분야)과 관련된 학과(전문교과 과정)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및 이에 준하는 (학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종합고)

※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

(단.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 상실)

○ 선발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 이수 비율 및 필수 교과목 이수

선발예정직렬	관련 전문교과 이수 비율	필수 2과목 이수
교육행정 9급	경영·금융 교과(군)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	· 사무관리(또는 사무행정) · 회계원리(또는 회계실무)

※ **위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과목 기준)

※ 관련 전문교과 해당여부는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17개 교과(군) 분류에 따름 (단, 전문과목 중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등)은 추천대상자 개인별 NEIS 성적증명서상의 교과(군) 편제에 따름

○ **학과 성적**

- 졸업자의 경우는 전(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아래 분류에 따라 학과 성적 산출
- **(전문교과)**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그 중 50%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 A
- **(보통교과)** 모든 보통교과 과목의 평균 석차등급 3.5 이내 (단, 음악·미술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위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학과 성적 산출방법은 [붙임1] 참고)

라. 학교(장) 추천 시 유의사항

○ 학교 추천 가능 인원

- 학교의 장은 추천시점 기준으로 학과정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2명 이내, 101명 이상일 경우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1개 학교당 총 인원은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추천대상자 선발

- 학교의 장은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다수의 졸업(예정)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장은 동일연도에 동일인을 다수의 기관에 추천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합니다.
- 학교별로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추천심사위원회(3인 이상으로 구성)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 **추천심사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 심사위원의 자의적 해석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객관적·명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회의 구성내역,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기록 및 관리 되어야 합니다.
· 추천대상자의 수가 추천 가능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 추천대상자의 관계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장 추천서 등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13.(월) 09:00 ~ 7. 17.(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을 기재한 추천현황표를 제출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교 → K-에듀파인 전자공문 제출)**

○ 제출서류: ‘추천현황표’ [붙임1] 서식

다. 제 출 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031-820-0572~0575)

라. 유의사항

○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추천현황표에 추천대상자 전원을 기재한 후 단일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할 증빙자료(전문교과 이수확인서・성적증명서 등)의 종류・제출방법・제출기간 등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렬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학교장 추천과는 별도로 해당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처: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경기도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7. 27.(월) 09:00 ~ 7. 31.(금) 18:00 [8. 3.(월) 18:00까지 취소]**

라. 응시수수료: 5,000원(9급)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사진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임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함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이미 현상된 사진을 재촬영한 사진 사용 불가
-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사.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응시표 출력기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8. 12.(수) 10:00 ~ 8. 29.(토) 11:30까지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사항

○【수정·취소】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마감일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점은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접수 확인】**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PC환경】운영체제 윈도우 8~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생존 장병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하단 등록기한 참고)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한(등록기한내 미등록시 가산점 미인정)

구분	가산점 등록 기한
제3회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2026. 8. 31.(월) 18:00까지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 번호 또는 증서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미적용)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 졸업 예정인 합격자가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명 절차에 대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8 수습근무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2027년 중 6개월간 수습근무(기본교육 포함)를 시작합니다.

나. 수습근무 기간 중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수행할 과제는 합격자별로 향후 각 기관(학교)에 배치된 이후 부여받게 됩니다.

다.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습근무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시보임용면제를 하고, 수습기간은 호봉에 반영합니다.

라. 수습근무 종료 시, 수습근무 중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및 임용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등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전(10:5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간 중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휴대가 금지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르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휴대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이며,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습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이 제한됩니다.(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붙임2】‘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접수기간: 7. 27.(월) 09:00 ~ 8. 3.(월)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031-820-0572~0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천현황표 서식 1부.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뉴스/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에 공고합니다.